

인 천 광 역 시



수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경유)

제목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안내

-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5.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대상확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 3.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신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법 제23조에 따라 2021.12.31.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붙임의 신고 대상 시설을 참고하여 신고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설치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흡수식 냉·온수기
 - 2005 ~ 2010년 설치 : 2021.12.31.까지, 2011년 이후 설치 : 2022.12.31.까지

붙임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 1부. 끝.



선업단지환경 전결 2021. 9. 13. 주무관 **성지연** 담당 **박승일** 대기보전과장 **리덕균**

협조자

시행 대기보전과-21031 (2021. 9. 13.) 접수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대기보 전과

전화번호 032-440-3428 팩스번호 032-440-8748 / sjy0220@korea.kr / 대국민 공개

인천시가 과잉대응하면 시민은 더 안전합니다!